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414
------------	------

2020년 4월 23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3일, 송아량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0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아량 의원)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9호도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2시간의 범위에서 50%를 할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

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할인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나. 주요골자

-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에 대한 중복된 할인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6호 삭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에서 시장의 고시 요건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3 ~ 4. 2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수정동의
 - 6호 삭제 및 제9호 조문 개정으로 할인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으로 한정하게

되면, 전통시장 이용시민이 할인 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보다 축소됨

- (현재) 전체 공영주차장 134개소 중 1급지 공영주차장(39)을 제외한 95개 모든 공영주차장이 할인 가능

※ 6호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시 모든 공영주차장(1급지 제외)을 30% 할인 가능

- (개정) 9호 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200m로 확대 하더라도 시민이 할인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17개소로 기존 대비 82% 축소됨

※ 전통시장 반경 200m 기준 사유

- ▶ 전통시장으로 부터 100m이내 고시한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최근 3년간 감면 실적이 없음
(전통시장 이용자의 높은 연령 층 등으로 대부분 전통시장 이용시 차량 이용하지 않음)
- ▶ 이용 가능한 공영주차장 반경을 최대 200m 예측하여, 산정

- 또한, 9호 개정안 ‘이웃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할인 적용대상 주차장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시민에게 재고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수반되는 문제 발생
- 전통시장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기존 조례안 대비 할인 공영주차장이 축소되지 않도록 9호 조항 수정 요청 및 복잡한 도심권 교통수요(녹색교통지역)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급지 제외’ 단서조항 유지 필요
- 1급지 공영주차장 39개소 중 32개소가 녹색교통지역 4대문안에 있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에 대한 중복할인 규정과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에서 시장의 고시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할인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현황】

구 분	조 항	조문내용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6호 (1급지를 제외한 전체 공영주차장 30% 할인)	·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 . 단, 1급지 공영주차장 제외 ※ 전통시장 이용시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
	9호 (전통시장 100m내 공영주차장 50% 할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제1항6호 및 9호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공영주차장 할인 금액이 각각 30% 및 50%로 상이하고, 적용기준이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¹⁾과 이웃한 전체 공영주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

차장을 이용한 경우 등에 대해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장 이용요금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 법 제19조2)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감면 기준 적용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서울시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³⁾ 122개소 중 현행 조례 제7조제1항6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30%를 할인받는 공영주차장은 91개소이며, 9호에 따라 50% 감면받는 공영주차장 수는 1개소이나

동 조례개정 이후 전통시장과 이웃한 주차장 범위를 현재 보다 2배

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2)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전체 공영주차장 개소는 134개소이며 이 중 유료는 122개소, 무료는 12개소임

넓은 200m로 확대하더라도 50% 할인받는 주차장 수는 1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할인혜택을 받는 공영주차장 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될 소지가 있음

【조례개정에 따른 대상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황】

구 분		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비 고
개정 전	제7조 제1항 제6호 대상(30%감면)	91	-	26	37	25	3	유료주차장 중 1급지 31개소 제외
	제7조 제1항 제9호 대상(50% 감면)	1	-	1	-	-	-	독립문고가밀 주차장
개정 후(50%감면)		17	12	2	2	1	-	전통시장과 200m내 이웃한 공영주차장 대상

※ 급지별 서울시 유료 공영주차장('20.4. 기준)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1급지⁴⁾에 있는 공영주차장 12개소에 대해서도 할인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4대문 주변, 강남·서초, 신촌 등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성된 1급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이용을 줄여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고자 하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이용 이후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 받은 사례⁵⁾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요금 감면정책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 1급지 : 4대문 주변, 신촌, 영등포, 강남·서초, 잠실, 천호, 청량리, 용산·마포, 미아, 목동지역

5) 요구자료 194번 : 주차장 요금 감면 조례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내역 자료요청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3년간 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감면 받은 내역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만으로도 1급지를 제외한 전체 시 공영주차장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개정조례안 적용시 요금할인이 되는 대상 주차장의 수가 전통시장에 이웃한 서울시 공영주차장으로 한정되어 현행조례에 비해 대상 주차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과 1급지로 선정된 지역은 주차장 이용을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범위 확대와 할인율을 높이되, 1급지 주차장은 할인혜택 주차장에서 제외하여 주차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전통시장 이용실적을 통해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최초 2시간까지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마련(안 제7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14
----------	---------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3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만으로도 1급지를 제외한 전체 시 공영주차장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개정조례안 적용시 요금할인이 되는 대상 주차장의 수가 전통시장에 이웃한 서울시 공영주차장으로 한정되어 현행조례에 비해 대상주차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과 1급지로 선정된 지역은 주차장 이용을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범위 확대와 할인율을 높이되, 1급지 주차장은 할인혜택 주차장에서 제외하여 주차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가. 전통시장 이용실적을 통해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최초 2시간까지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마련 (안 제7조)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같은조 같은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안 같은조 같은항 제9호를 제8호로 다음과 같이 하며, 안 같은조 같은항 제10호에서 12호를 각각 제9호에서 제11호로 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전문위원실안)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p> <p>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u>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u></p> <p>7·8. (생략)</p> <p>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p> <p>10. ~ 1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제></p> <p>7·8. (현행과 같음)</p> <p>9. ----- -----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 있거나 이웃한 ----- 전통시장 등에서 구매한 -- 대하여 ----- -----</p> <p>10. ~ 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p> <p>① <u>(개정안과 같음)</u></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u>(개정안과 같음)</u></p> <p>6·7. <u>(개정안과 같음)</u></p> <p>8. ----- -----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p> <p>9. ~ 11. (개정안과 같음)</p> <p>②·③ <u>(개정안과 같음)</u></p>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0호에서 12호를 각각 제9호에서 제11호로 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u></p> <p>7. · 8. (생략)</p> <p>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p> <p>10. ~ 1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u>< 삭제 ></u></p> <p>6. · 7. (현행 제7·8호와 같음)</p> <p>8. ----- -----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p> <p>9. ~ 11. (현행 제10~12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